

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

의안 번호	26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7. 19.

발 의 자 : 조승남의원의외 3인

1. 제안이유

속초시의회 회의 의안심의에 필요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
자의 범위와 그 출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의안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
(안 제2조)

1.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, 의안, 속기공무원
2.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전문위원
3. 기타 의장이 허가하는 자

나.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
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본회의장 출입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고
출입토록 함. (안 제3조)

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속초시의회회의 의안심의에 필요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출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출입자의 범위) 의안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, 의안, 속기 공무원
2. 상정 의안과 관련있는 전문위원
3. 기타 의장이 허가하는 자

제 3 조 (출입절차) ①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자가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본회의장 출입증 (별표1)을 교부받아 패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.

②사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장 (별지 제1호서식)을 작성, 비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본 회 의 장 출 입 증 교 부 대 장

[illegible]

국 민

호 민

본 회의장 출입증



제 호

속 초 시 의 회

준 수 사 항

1. 출입시 반드시 과용 하여야 함
임다.
2. 확인여부 되었을 수 있음임다.
3. 공부가 끝났을 때는 반납하여야
함임다.
4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순초시
의회로 반납 하십시오.